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내용과 행사범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을 중심으로 -

서 현 덕*

<차례>

- | | |
|-------------------------------------|---|
| I. 서론 | IV. 책임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리 |
| II. 책임보험에서의 구상금청구와 보험자대위의 구별 | V.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검토 |
| III.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리 | |

주제어 : 손해보험,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보험자대위, 중복보험, 과실비율

<국문초록>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일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여기서 책임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상 연대책무를 지는 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뒤에 공동면책된 한도 내에서 다른 연대책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인의 책임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보험자 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구상금 청구를 당하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책임보험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책임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게도 그 부담부분 한도 내에서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바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자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한 경우, 즉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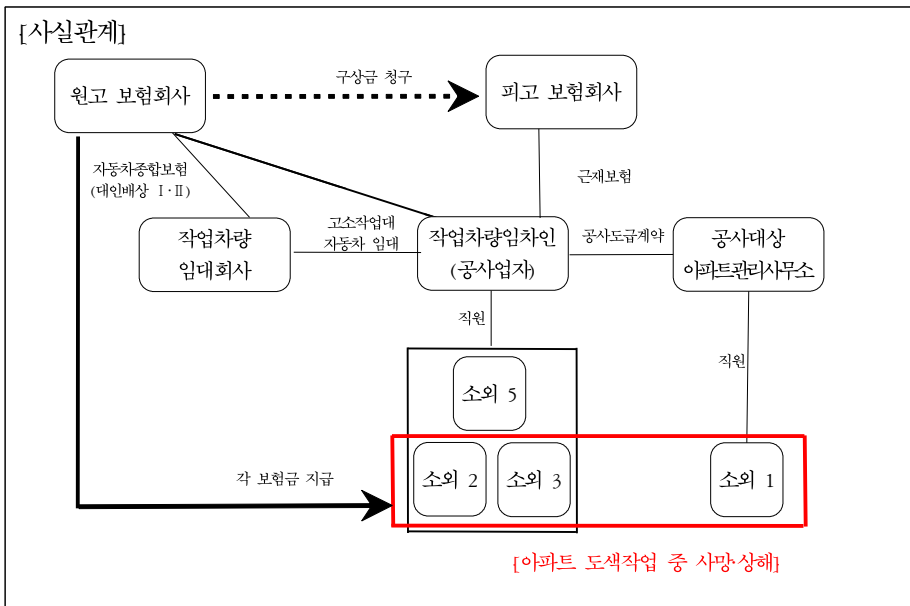
* 한화손해보험 사내변호사

- 논문접수일(2016.12.10), 심사개시일(2016.12.25), 게재확정일(2016.12.26)

협자로 하는 책임보험자가 그 중 일부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어떤 책임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적인 소송 발생에 따른 소송경제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해결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보험자간의 부담분에서 책임보험자간의 중복보험 처리에 따른 안분부담분을 산입하여 그 구체적 구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4다42202 판결은 그 표현상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이를 적절히 지적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I. 서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M파이프 주식회사(이하 'M파이프'라 함)와 고소작업(高所作業)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대인배상 I, II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 1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J공사(이하 'J공사'라

함)와 사이에 대표피보험자를 J공사와 각 원도급업체로, 인당 보상한도액을 2억원,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억원으로 각 정하여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보상규정과 면책규정이 기재되어 있었다.¹⁾

[제1보험계약의 약관규정]

제13조(면책사항) 1. (2), ⑨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제13조(면책사항) 1. (2), ⑨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제2보험계약의 약관규정]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밑줄 및 강조는 필자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의 중복보험 분담금 산식]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나. J공사는 2011. 11. 22.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공사의 직원 소외 5는 2012. 3. 8. 위 아파트에서 J공사가 M파이프에서 임차한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소외 1, J공사 직원인 소외 2, 소외 3을 태우고 약 15m의 높이에서 아파트 벽면 도색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붐대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1, 소외 2가 추락하여 사망하고, 소외 3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J공사는 소외 5, 소외 1, 소외 3 등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에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을 방지하는 와이어로프, 안전대, 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에 관하여 사전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제작업체 겸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 직전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면서 고소작업 사다리의 인출 와이어 로프의 교체시기가 도래한 상태임을 발견하여 교체 진단을 하고 실질적 차주인 소외 4(M파이프의 명의를 빌려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외 4가 교체작업을 거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 간 사실이 있어 M파이프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마. 원고는 J공사의 보험자로서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소외 2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88만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액수가 제1, 2보험계약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그 초과손해이므로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액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1, 2보험계약 상 중복보험산식 중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계산이 1/2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4,794만원 $\{=(5,000\text{만원}+4,500\text{만원}+88\text{만원})/2\}$ 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이에 제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주로 소외 1의 경우에 중복보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소외 2, 소외 3의 경우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른 분담금 청구가 J공사의 과실비율을 넘어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하여 다투었다²⁾.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판결)
- 원고 청구 중 소외 1부분 청구 기각, 소외 2·소외 3부분 청구 전부인용

(1)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

2) 소외 1의 경우 중복보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사항은 아니므로 판시내용을 소개하는 것 외에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편 된다.

(2)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소외 1 부분에 관하여는, ① 제1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M파이프, 승낙피보험자는 J공사이나, ②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J공사 및 각 원도급업체인데, 이 사건 중 원도급업체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소외 1은 J공사가 아닌 원도급체인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 ③ 소외 1이 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J공사의 직원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올라간 이유가 도급업체로 공사 현장 감독을 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1 부분은 그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중복보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에 관하여는, ① J공사는 제1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M파이프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사실, ② 제1, 2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인 J공사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피용자 내지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이익이 일정부분 동일하고, 보험기간도 일정기간 중복되는 사실, ③ 소외 2, 소외 3은 같은 피보험자인 J공사의 근로자이고, 보험기간 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실, ④ 제1, 2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원고가 소외 2, 소외 3에게 지급한 4,588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종합하면,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은 중복보험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1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의 유족 및 소외 3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합계액 4,588만원 중 1/2 부분인 2,294만원은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 부담 부분을 공동면책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채무가 있다.

(4) 이에 피고는 중복보험 법리에 따른 부담금 청구액은 자신의 과실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이자 차

주인 M파이프의 보험자 지위도 겸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M파이프의 과실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에 중복보험의 분담금으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 2보험계약에도 이와 같은 중복보험 분담금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독자적인 법리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제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47483 판결)

-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 1심 판결 유지

(1) 소외 1 부분에 관한 중복보험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소외 2, 소외 3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는 1심 판결 이유에 추가하여, ① 제1, 2보험계약에 공동되는 피보험자인 J공사는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중복피보험자인 J공사의 과실로 인한 보상책임 부분에 국한하여 중복보험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상법 제752조의2와 이 조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복보험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면책시켰다면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나머지 중복보험자에게 지급보험금 전액을 기준으로 그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만약 M파이프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출재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M파이프 또는 그 보험자인 원고에게 재차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우선 과실비율에 따라 고유한 부담부분을 정한 다음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위 결론이 손해의 분담에 있어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도 않는다.

다. 대상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 2심판결 내용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함

(1) 원고의 상고이유 중, 소외 1 부분에 관하여는, 제1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는 J공사이고,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이어서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중복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중, 원고의 소외 2, 소외 3 부분 구상금 청구에서 M파이프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중복보험 부담 부분을 구상당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과 그 보험자인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반한다.³⁾ 그러므로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부분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갑의 과실비율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M파이프의 보험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3) 이해의 편의상 대상판결이 들고 있는 사례를 본건 사실관계에 대입할 경우,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은 J공사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은 M파이프를,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고를,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원고를, 피해자 병은 소외 2와 소외 3을 각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없고 원고의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은 피고의 중복보험 부담부분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J공사의 책임 부분으로 제한된다.⁴⁾

II. 책임보험에서의 구상금청구와 보험자대위의 구별

1. 보험자대위의 의의 및 인정근거

(1)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사고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⁵⁾ 상법상으로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물권적 권리)를 대위하는 잔존물대위(상법 제681조)와, 제3자에 대한 권리(청구권)를 취득하는 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가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2) 보험자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정책설과 이득방지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정책설은 보험자는 보험료를 대가로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갖는다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위험을 부보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자인 제3자가 저절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더욱 부당하므로, 다수인으로 구성된 위험공동체를 관리하는 공익적 지위에 있는 보험자에게 정책적으로 그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보험사고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자대위가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⁶⁾ 반면 이득방지설(보상계약설)의 경우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어

4) 대상판결의 경우, 이전에도 대상판결 결론과 동일한 취지의 선행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8. 선고 2010나29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이 존재하였음을 밝히어 둔다.

5) 박세민, 『보험법』 제2판, 433면.

6) 양승규, 『보험법』 제5판, 237면.

편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잔존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는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다.⁷⁾ 판례는 이득방지설의 보험자대위권의 인정취지를 실시하고 있다.⁸⁾

2. 청구권대위와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의 구별 필요성

(1) 상법상 보험자대위는 대위의 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권리 이전의 양도행위나 당사자의 개별적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대위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피보험자가 본래 가해자에게 가지는 청구권 자체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⁹⁾ 또한 보험자대위의 시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는 반면,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피보험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¹⁰⁾

(2) 그런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청구권대위의 경우와 달리 본건과 같은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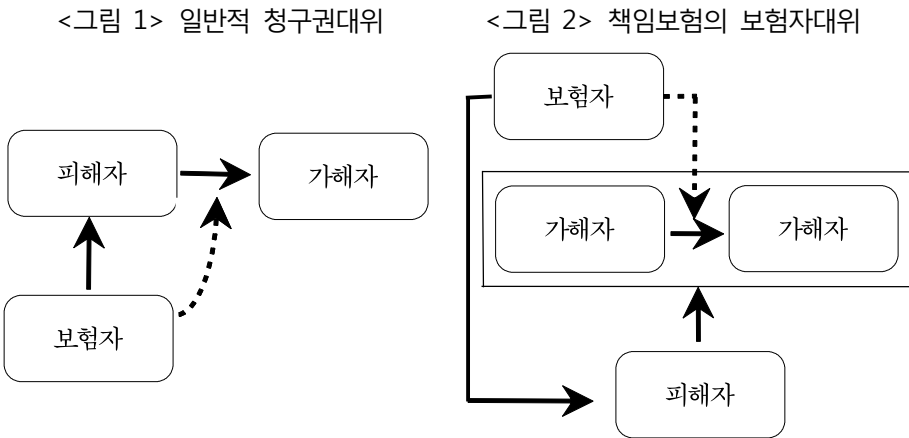
7) 김성태, 『보험법강론』, 441면;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1판, 622면; 이기수 외 2인, 『보험·해상법(상법강의IV)』 제8판, 145면.

8)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등

10) 대법원 1995. 9. 26. 95다23521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대위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갖는 구상권의 대위취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즉,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의 채무자에 해당하게 되며, 확립된 판례의 견해에 따를 때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보험계약상 정한 바에 따라 병존적으로 채무인수한 것에 불과하다.¹¹⁾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책임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취득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또는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일방이 부진정 연대책무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도 반복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1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등

한편 이와 같은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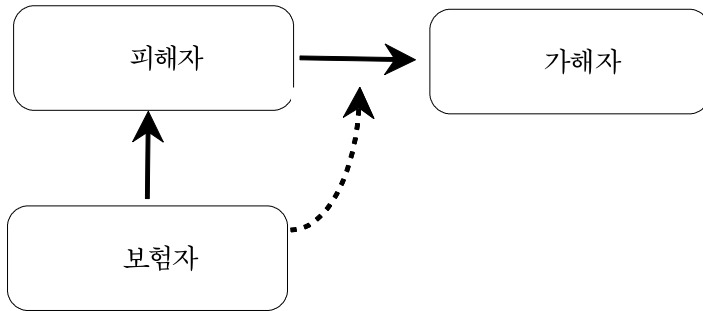
Ⅲ. 청구권 대위에서 보험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리

1. 청구권대위에 있어서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제한 법리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 청구권 대위에서는 보험자는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아 오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권원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든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든 불문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에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 감경의 법리 등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도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적어지게 되고, 보험자가 일부보험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의 일부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으로 피해자의 잔여 손해배상채권과 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청구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에 기한 보험자의 구상금 청구권과 피해자의 잔여 손해배상 청구권의 우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12)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 등

<그림 3> 청구권대위의 구조



(2) 피해자는 자신 소유 동산(합계 가액 100) 중 일부(전체 가액 중 50)만을 보험자에게 보험 가입하였고, 가해자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동산에 전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50을 지급할 것이다. 이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보험사고 발생의 과실비율이 40 : 60일 경우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은 60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60을 피해자의 잔여 피해액 50과 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청구권 50 중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¹³⁾

(3)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권의 제한 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소위 상대설에 따라 일부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다.¹⁴⁾ 이를 소위

13) 학설의 논의 중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도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권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상황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i) 실제법상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배상의 무자의 자력 여하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ii) 제3자가 무자력이어서 보험자나 피보험자 모두가 채권을 집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제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iii) 역으로 제3자가 자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법상의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권 제한 문제에서 집행단계의 문제인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까지도 문제상황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집행단계에서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재차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을 열후한 위치에 놓고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배상청구권에 우선하여 배당할 것인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이를 긍정한 하급심 판례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24. 선고 2015가합1665 판결 참조.

1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등

차액설(손해액초과주의)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다수설적 견해¹⁵⁾이며, 일본 보험법 제25조의 명시적 입법 태도이기도 하다.¹⁶⁾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위 사례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 60은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잔여 손해액 50에 먼저 충당되게 하기 위하여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는 60에서 50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을 때에 한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에 따른 감액이 4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 100만큼을 전부 전보할 수 있게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구상권의 인정범위와 비판

(1)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청구에 있어서 판례는 여전히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위와 같은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피해액 중 가해자인 제3자의 과실을 상당액을 한도로 보험자에 해당 하는 공단의 구상금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하고 있는 입장이다.¹⁷⁾ 즉,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 경우 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청구는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60을 한도로 공단이 지급한 50이 전액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 50외에 피해자로부터는 공단이 전부 구상해 가고 남는 10만큼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과실에 따른 감액 40을 온전히 감수하여야 한다.

(2) 보험자인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또는 보험급여사유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

15) 양승규, 보험법, 247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585면; 손주찬, 상법(하) 596면, 伊澤孝平, 보험법, 308면. 독일, 프랑스 등의 통설에 따른 것이다.

16) 김형기, 일본 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손해보험협회 2009. 1월, 38면.

1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등 다수

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취지가 앞선 상법상의 보험자대위의 인정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데, 유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만을 피해자의 잔여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우선하여 보장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 청구권대위에 있어서 보험자의 구상권이란 손해배상책임은 지는 제3자가 존재할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부차적이고 임의적인 것으로 그 존부와 범위가 가변적이다.¹⁸⁾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그 전체 손해를 전보받아야 할 필요성은 큰 반면 전체 보험단체가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취득 제한으로 입게 될 손실은 미미하거나 당초 예상하지 않은 부가적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도 내로 일부보험자의 구상권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액을 일부 지급하고 행사하는 구상권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책임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법리

1.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인에게만 책임보험자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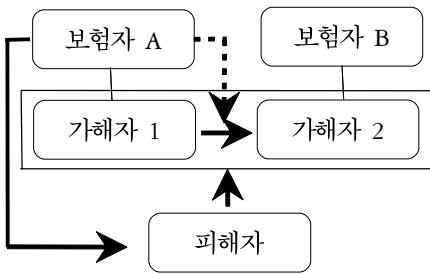
(1)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청구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대위하는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발생할 수 있고, 판례¹⁹⁾에 따를 때 공동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먼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기준으로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전체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18) 실무상으로도 보험자대위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위권포기특약 등의 방법으로 보험자의 대위권행사를 예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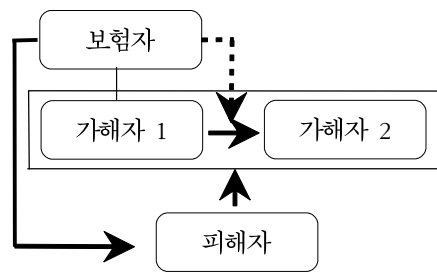
1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책임보험자가 있는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런데 본건 판례와 같이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책임보험자가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는 중복보험처리가 되는 공동의 피보험자인 관계에 있을 때 책임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각자 책임보험자가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그림 4> [책임보험 대위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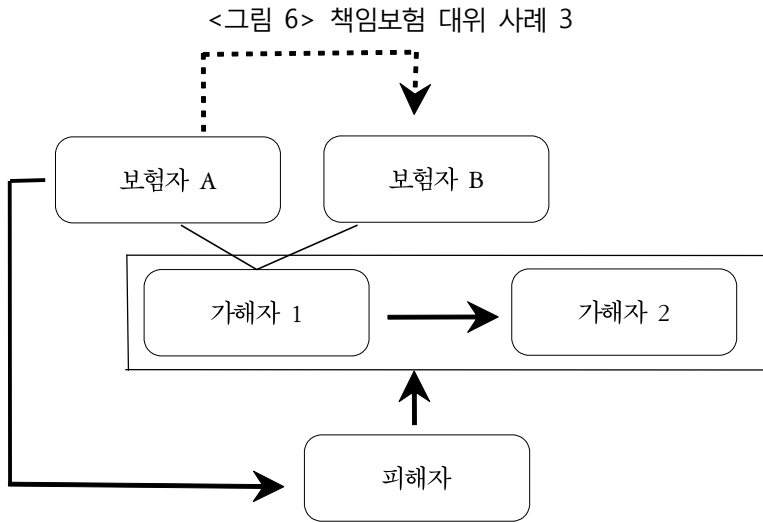
<그림 5> [책임보험 대위 사례 2]



(3)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100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7:3의 비율로 존재하고, 가해자 1과 가해자 2 사이의 과실비율은 3:4라고 가정해보자. 또한 가해자 1의 책임보험자 A는 보상한도를 50으로, 가해자 2의 책임보험자 B는 보상한도를 100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자. 이렇게 될 때 공동불법행위자들인 가해자 1, 2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는 70으로 확정된다. 가해자 1의 보험자 A가 피해자에게 50을 지급한 뒤 가해자 2 및 그 보험자 B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A가 50을 지급함으로써 가해자 2가 공동면책 된 부분인 20에 한하고 책임보험 대위 사례 1], B에게도 이를 직접청구권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책임보험 대위 사례 2]. 또한 가해자 2의 보험자 B는 피해자의 잔여 손해배상금인 20을 지급하고 가해자 1 및 A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가해자 1과 가해자 2가 각각 부담하였어야 할 부담부분인 30과 40을 각각 보험사 A, B가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즉,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의 각 책임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 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인에게 중복보험이 성립하는 수개의 책임보험자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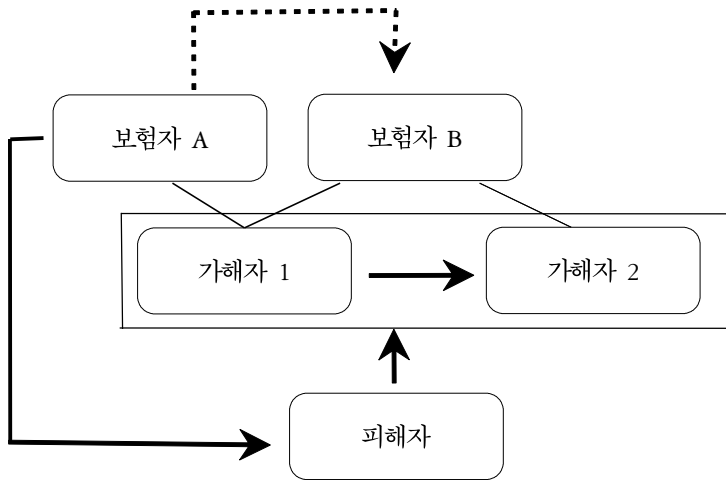


앞선 예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100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7:3의 비율로 존재하고, 가해자 1과 가해자 2 사이의 과실비율은 3:4라고 가정해보자. 또한 가해자 1의 책임보험자 A는 보상한도를 50으로, 또 다른 책임보험자 B는 보상한도를 100으로 설정하였다고 하자. 이렇게 될 때 공동불법행위자들인 가해자 1, 2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는 70으로 확정된다. 가해자 1의 보험자 A가 피해자에게 50을 지급한 뒤 가해자 2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A가 50을 지급함으로써 가해자 2가 공동면책된 부분인 20 부분에 한한다. 그런데 A와 B는 가해자 1에 대해서 중복보험 관계에 있으므로 상법 제671조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보험금액의 비율(여기서는 보상한도의 비율)에 따라 비례분담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 1의 부담부분인 30에 대해 A와 B는 각각 10, 20씩 분담하여야 하므로 A는 초과 부담부분인 20에 대해

B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때 피해자는 잔여 손해액 20을 가해자 1 및 가해자 2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가해자 1이 피해자에게 20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보상한도를 모두 지급한 A에게 보험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가해자 2 또는 B에게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 때 B가 20을 가해자 1에게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가해자 2에게 20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3.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인에게 중복보험이 성립하는 수개의 책임보험자가 있고 그중 한 책임보험자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한 경우

<그림 7> 책임보험 대위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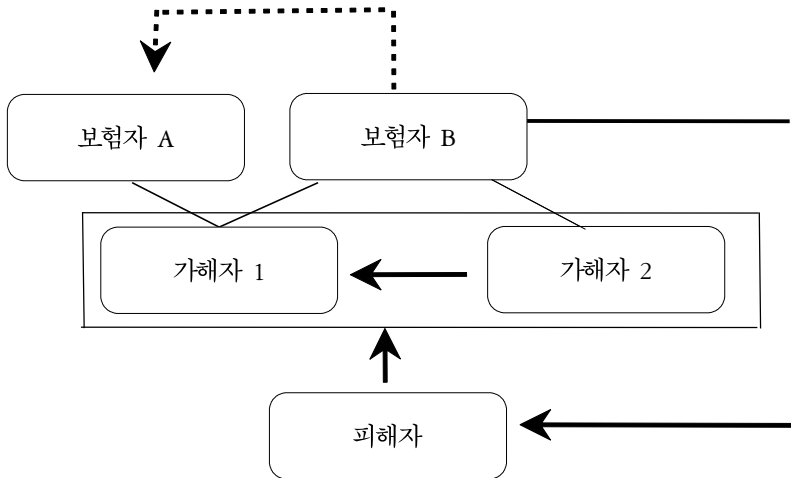


[책임보험 대위 사례 3]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앞선 예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B가 가해자 2의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갖고 있고 그 보상한도가 50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구상에 따른 부담관계에는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해자 2가 보험자 B에게 그와 같은 책임보험을 든 것은 우연한 사정이며, 보험자 B는 얼마든지 제3의 보험자 C, D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구상관계인 A가 B에게 20을 구상하고, 가해자 2

에게 20을 구상하는 것은 유지된다. 여기에 가해자 2와 보험자 B 사이의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가해자 2에 대한 구상금 청구부분을 직접청구하여 20만큼을 추가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A는 B에게 40을 구상할 수 있는데, 위 40은 가해자 1의 부담부분 30에서 B가 중복보험자로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부분 20과 가해자 2가 A에게 부담하여야 할 20을 그 책임보험자 B가 보험처리하여 준 것의 합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여기서 피해자는 잔여 손해배상청구를 가해자 1과 가해자 2 모두에게 할 수 있고 역시 이에 대한 최종적 부담 주체는 가해자 2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상한도가 남아 있으므로 가해자 2는 B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보험자 B는 A에 대한 중복보험자로서의 부담부분 20과 가해자 2의 책임비를 상당의의 부담부분 40을 각각 부담하여 총 60만큼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4.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인에게 중복보험이 성립하는 수개의 책임보험자가 있고 그중 한 책임보험자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할 때 일인의 중복보험자이자 나머지 일인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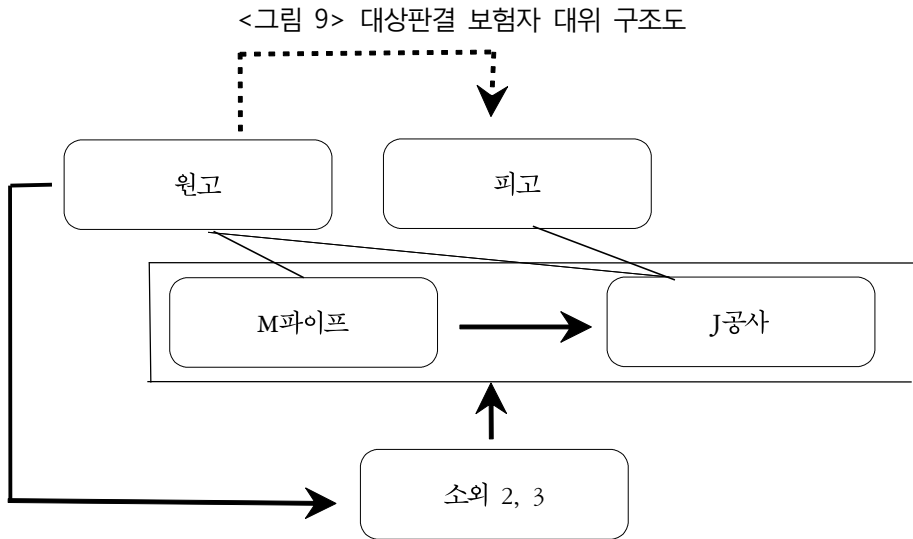
<그림 8> 책임보험 대위 사례 5



[책임보험 대위 사례 4]에서 보험금의 지급 당사자가 A가 아닌 B라고 가정해 보자. 즉, A가 아닌 가해자 1, 2의 책임보험자 B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인 70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선 가해자 2의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가해자 1을 공동면책시킨 부분에 해당하는 30에 대해서는 가해자 1에게 구상청구 할 수 있고 이를 보험자 A에 대해 직접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험자 A는 보험자 B의 청구에 대해 가해자 1의 30에 대해서는 중복보험 처리에 따른 비례보상을 주장하며 다시 보험자 B에게 20만 원을 구상청구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보험자 A는 10만 원을 보험자 B는 6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보험자 A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된다. 이는 어느 보험자가 먼저 지급하던 간에 그 최종적 부담부분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당연한 결론이라 하겠다.

5.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건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범위를 판단하여 보자.



(1)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는 소외 2, 소외 3에게 지급된 4,588만원이며, 본건에서 피해자 사이의 과실은 따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M파이프와 J공사가 책임져야 할 금액은 위 4,588만원 전액이다. 이 때 M파이프와 J공사의 각 과실비율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나 M파이프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M파이프의 과실비율을 a, J공사의 과실비율을 b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가해자 M파이프 및 J공사의 책임보험자 원고와 J공사의 책임보험자 피고의 중복보험에 따른 부담금 계산비율은 1:1로 인정된다.²⁰⁾ 여기서 원고가 소외 2, 소외 3에게 전체 손해액 4,588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J공사가 공동면책 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4,588만원에서 J공사의 과실비율 상당액 $\{=4,588\text{만원} \times (b/a+b)\}$ 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금액은 J공사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 또한 J공사의 책임보험자이므로 중복보험 법리에 따라 J공사의 과실비율 상당액 $\{=4,588\text{만원} \times (b/a+b)\}$ 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복보험 부담비율에 따른 금원 $\{=4,588\text{만원} \times (b/a+b) \times 1/2\}$ 을 원고에게 재구상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J공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에서 중복보험에 따라 피고에게 재구상해 주어야 하는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88\text{만원} \times (b/a+b) \times 1/2\}$ 이라고 보아야 한다.

20) 본건의 경우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의 각 보상한도를 알 수 없으나, 두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공히 중복보험 부담금 산식을 독립책임액 부담방식(손해액 \times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고, 본건에서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에 따른 각 지급보험금이 동일하게 계산됨에 따라 중복보험 부담비율이 1:1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자동차보험 대인II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상한도의 설정이 없는 책임보험의 중복보험 처리를 위해 이에 관한 특약을 두어 그 중복처리에 관한 비율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J공사를 공통의 피보험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나머지 원고가 소외 2, 3에게 각 지급한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대위하는 청구권의 내용이 사실은 M파이프의 J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청구하는 것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위 제1심 및 제2심 판결은 원고가 J공사의 보험자이기도 하고, 피고 역시 J공사의 보험자이므로 J공사가 소외 2, 3에게 부담하는 손해를 원고가 공동면책시키고 중복보험에 따른 비례보상으로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식은 M파이프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아 양자가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지 않을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M파이프의 과실에 존재하는 순간 M파이프의 부담부분을 공동면책시킨 피고의 M파이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막을 근거가 없게 된다. 이는 곧 M파이프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무용한 구상금 청구를 반복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2) 대상판결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며 판결문에 제시된 사례에서 제2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권의 범위를 피고판결문 사례에서 제1책임보험계약의 계약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재구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J공사의 과실비율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계산식이 동반되지 않아 그 구체적 의미를 정확히 검증할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계산식에 비추어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기서 'J공사의 과실비율'은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과실비율이 적용된 숫자로서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원은 M파이프에 대비되는 J공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에서 중복보험 부담비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구상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J공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에서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중복보험 부담 부분으로 재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한 금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3)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법리를 논리적 모순 없이 설명하면서도 중복보험자로서의 구상권 범위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추후 하급심 판례에서 구체적 계산식이 동반된 결론을 통해 보완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3.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2.
- 이기수 외 2인, 『보험·해상법(상법강의Ⅳ)』 제8판, 박영사, 2008.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1판, 2009.

<참고논문>

- 김헌무, “중복보험의 제 문제”, 경영법률 17권 2호, 2007.
- 김형기, “일본 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손해보험협회 2009년 1월.
- 문상배, “수개의 책임보험이 그 피보험자의 일부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22집, 2011.
- 양승규, “두 개의 책임보험과 중복보험의 법리”, 손해보험협회 2011년 9월.
- 이원석, “화재보험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 제103호, 2015년 상.
- 이주현,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2002. 12.

<Abstract>

Actual Meaning and Specific Range of a Insurance Subrogation at the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4Da42202 -

Seo, Hyun Duk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of one joint tort-feasor could make a claim for reimbursement to another joint tort-feasor right after compensate the victim(Supreme Court 1994. 10. 7. 94Da11071). In other words, the actual meaning of reimbursement which liability insurer made a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 is that one of the joint debtor could make a claim reimbursement to another when he repay debt by more than his portion of liability under a joint obligation principle used in civil case. If the liability insurer of one joint tort-feasor make a claim for reimbursement to another based on the insurance subrogation, the joint tort-feasor who was claimed recompense could also have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and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compensate the victim first could make a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using by the third parties' direct rights against insurer(Supreme Court 1998. 9. 18. 96Da197651 ect.).

In that case, if the insurer which makes direct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which has only one joint tort-feasor as a insured, is also a liability insurer of that joint tort-feasor, that is claim making liability insurer has both joint tort-feasor as a insurant, it is the matter how can we estimate and assess the range of that reimbursement. The answer of this matter requires that it must be arrive the same conclusions regardless which liability insurer pays first, and it can preserve economics of procedure preventing irrational extra lawsui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nclude calculated division amount resulted from process of double insurance in each liability insurer's share of obligation coming from joint tort-feasor's

mutual fault ratio. As properly point these ou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2014Da42202 is thought to have reached reasonable conclusion although it has somewhat misleading to say.

Key Words : Non-Life insurance, Reimbursement of Liability Insurer, Reimbursement of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Insurance Subrogation, Double Insurance, Fault Ratio